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정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01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9. 27.
3. 회 부 일: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회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2.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40</u> -----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동 위원회는 제5조¹⁾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제6조²⁾에 따른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³⁾에 따른 사회적응을 위한 주요 사항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함.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⁴⁾과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됨.⁵⁾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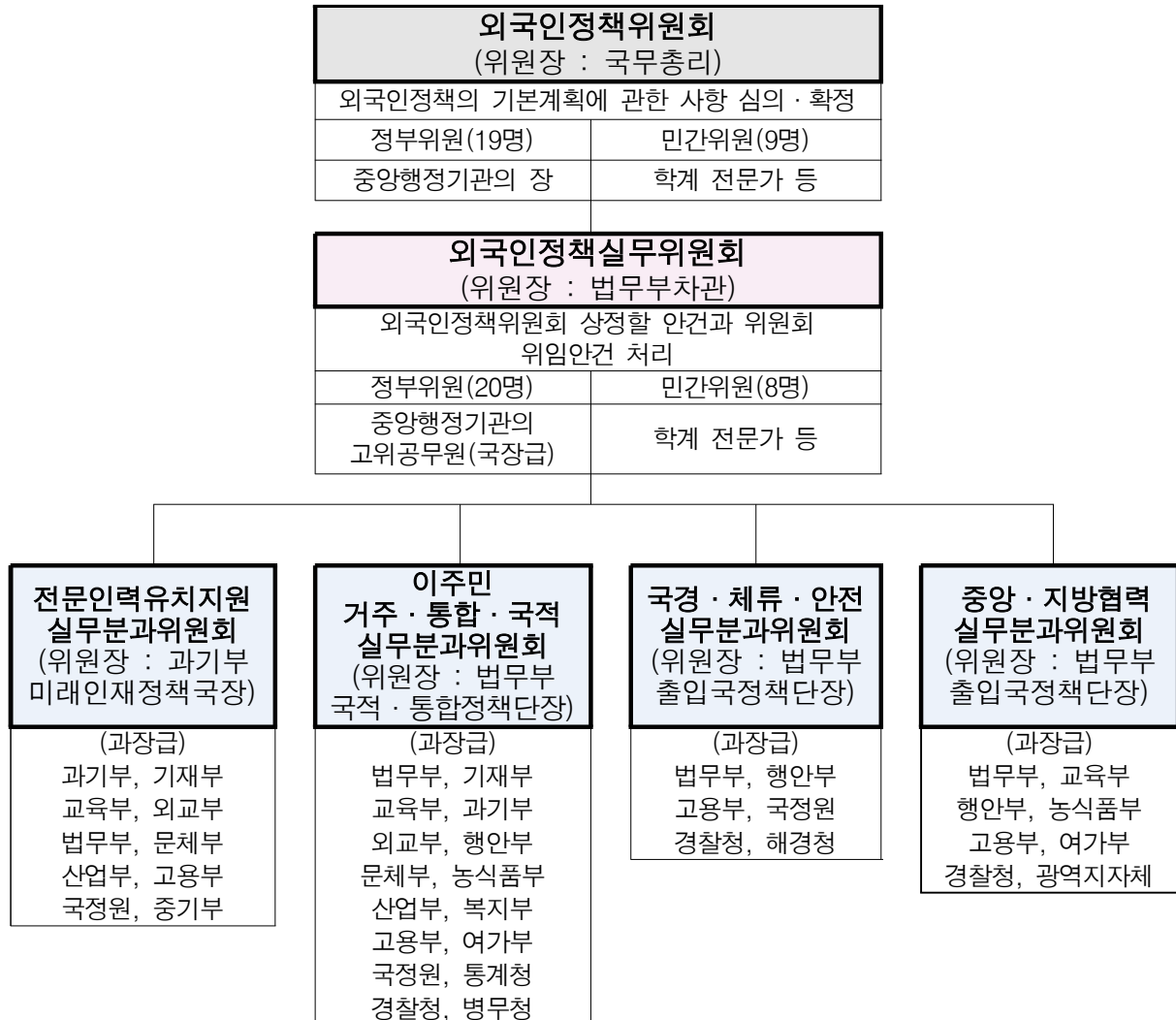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당연직 정부위원 19명, 위촉직 민간위원 9명, 간사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⁶⁾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⁷⁾제1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에 상정할 사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출처: 법무부)
-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법 제8조③)
 - (위원장) 국무총리
 - (당연직) 정부위원 19명 (기재부·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 위원장, 청장)
 - (위촉직) 민간위원 9명 (임기 3년, 국무총리 위촉)
 - 現 제6기 '23.6.1~'26.5.31
 -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 개최 : 연 1~2회 서면으로 개최
- 7)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

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포함하려는 것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



※ 자료 : 법무부

토 결과를 해당 협의회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공백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 유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민 정책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외국인 유치·정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⁸⁾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위원회 심의사항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현행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⁹⁾ 실무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중앙·지방협력 실무

8) ○ (경상북도) 2023년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였으며, 2024. 2. 경북도립대학에 글로벌 한글학당을 개설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경상남도) 제조업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목표 외국인 산업인력을 6만 700 0명으로 정하고,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충청북도) 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2023.1. 마련함.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외국인 석·박사 과정 선발 인원 50여 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함.

○ (전라남도)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해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등을 추가 배치하였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발표에 발맞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과'를 추가 설치하였음.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광역지자체의 과장급을 포함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인 정책은 전국적 관점과 일관성, 통일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역 특수 상황의 과도한 반영은 외국인정책의 비효율성과 신뢰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 체계적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¹⁰⁾

문 의 처

02)6788-5053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10)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방 현실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참여와는 별도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위촉위원들에 대하여도 시·도지사 협의회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